

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2009. 3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□ 제안 이유

- 평창군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·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체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공예산업을 적극 육성시키고, 이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을 설치하고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나.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다.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바. 협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사.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아.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~제13조)
- 자.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4조 ~ 제16조)

□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다. 신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'09. 2. 17 ~ 3. 9(21일간) 실시,
제출된 의견 없음

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제144조에 따라 평창군 관내의 공예산업을 육성시키고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(이하 “공예관”이라 한다)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진부면 송정리 1306-3번지 일원에 둔다.

제3조(시설) ①공예관은 군 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(실용적이거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생산품을 말하며 민속공예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하며, 다른 목적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
②공예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

1.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시설
2. 공예품의 창작 및 체험시설
3. 공예관 운영을 위한 휴게시설
4.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

제4조(적용) 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2장 시설의 관리위탁

제5조(위탁운영) ①군수는 효율적인 공예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,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공예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일까지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신청에 의하여 재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③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

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등의 일부를 「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자 선정)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예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.

②공예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, 물품, 장비 보유현황
2.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
3. 공예·특산품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
4. 공예관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

③제1항에 의한 수탁자는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선정한다.

제7조(협약체결)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1. 수탁자의 인적사항
2. 위탁대상 재산·기간·사무 및 그 내용
3. 사용료·운영비·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4. 수탁자의 의무·안전관리,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군수가 필요한 사항

제8조(사용료) ①수탁자는 수익시설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, 납부방법 등은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사용료 요율은 공예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.

③공예관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, 시설유지관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.

제9조(협약취소)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·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·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
2. 수탁조건,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
3. 공용,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0조(양도 및 전대금지)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 다만,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조(시설관리 의무) ①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감독) ①군수는 필요할 경우에 공예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13조(구성) ①군수는 공예관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관계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.

1.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
2. 평창군 문화원장
3. 기타 문화예술 또는 공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

③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관광경제과 공예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14조(기능) 위원회는 공예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예산업 육성 및 공예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공예관 수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
3. 공예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임기 등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「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
제4장 보칙

제1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및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44조 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0조 (사용·수익 허가) ① 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(隨意契約)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
2.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(이하생략)

④ (생략)

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등

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22조 (사용료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 (생략)

제27조 (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당해 행정재산등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2조 (사용·수익 허가 및 전대)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등의 사용·수익의 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.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

2.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

3. 그 밖에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·수익이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.

제14조 (사용료)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행정재산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별 또는 횡수별로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

③~⑤ (생략)

제19조 (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)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②행정재산등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.

1. 천재 지변 그 밖의 재해로 관리위탁된 행정재산등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
2.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수탁자가 일정기간 재산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

③(생략)

제20조 (수탁재산의 관리) ①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,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 (수탁재산의 이용료 등)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재산을 사용·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과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,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.

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전에 정하여야 한다.

제22조 (관리상황의 보고 등)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
•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

제22조(행정·보존재산의 위탁관리)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 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,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-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·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.
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-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~⑥ 생략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"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약체결등)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